

신내3 우디안 아파트  
간담회 자료

---

# 신내3지구 4단지 민원관련 처리대책(안)

---

2016. 05.

S H 공 사

#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대책(안)

## 1. 공사장 환경관리 계획

○ 환경관리 계획

구 분		내 용	비 고
소음	방 음 벽	- 단지경계 · 대로변,공원방면 H=6M (RPP방음벽) · 구릉산방면 H=3.4M(E.G.I철판) - 천공작업시 · 이동식 가설방음벽 및 에어 방음벽 설치	
	소음측정	- 초등학교, 유치원, 아파트 인접 도로변 소음측정(1회/일) - 4단지 중간게이트 가설웬스에 고정식 소음측정기 설치 - 4단지 암발파시, 가설웬스 중간 게이트에 알림 현수막 설치	
진동	진동제어 발파	- 진동제어 발파, 비산방지 덮개 - 4단지 발파작업시 진동 측정기 설치	
분진	방진덮개	- 덤프트럭 방진덮개 사용	
	세 료 기	- 설치 운영	
	고압살수기	- 터파기 시 이동식 고압살수기 사용	

## 2. 암처리계획

### ■ 암발생 물량 최소화 조치(설계변경)

사업계획변경(안) 내용		당 초	변경(안)	비 고
계획세대수 조 정 및 지하 전 기실, 저수조 등 위치변경	세대수	291호	289호	403동 1층 전용 21type- 감 2호
	지하 전기실, 저수조 위치 변경	403동 지하1층	402동, 지상 주민운동시설 하부 지하1층	위치 변경
	암발파물량	10,596m <sup>3</sup>	5,907m <sup>3</sup>	감) 4,689m <sup>3</sup>
	암발파 공사기간	90일	120일	증 30일

## ■ 암발파시 소음,진동 관리계획

### ○ 암발파전 사전 조사 완료

- 우디안 아파트 사전조사 실시('16.2.29~3.2) 및 그 결과 해당 관리소에 통보('16..4.28)

### ○ 발파공법 변경

#### ① 발파 공법 변경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발파공법	소규모 진동제어 발파	- 70m이내 정밀진동제어발파	
		- 70m이상 소규모 진동제어발파	

#### ② 발파 시간 조정

- 오후 12시~오후 13시 (새솔초등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발파)

#### ③ 소음저감 방안

- 단지경계
  - 대로변, 공원방면 H=6M(RPP방음벽)
  - 구릉산 방면 H=3.4M(E.G.I철판)
  - 이동식 에어방음벽 설치
  - 크로아드릴(유압) 로더측 방음막 설치
  - 4단지 중간게이트 가설웬스에 고정식 소음측정기 설치(추가)



#### ④ 진동, 분진저감 방안

- 블라스팅 매트 설치
- 덤프트럭 방진덮개 사용 및 세륜기 설치운영
- 이동식 고압살수기 사용



## ■ 시험발파 추가 실시 검토

### ○ 1차 시험발파 결과('16.3.3)

- 시험발파 장약량(0.75kg, 0.5kg)을 적용시,
  - 약 80m 이격거리의 우디안 아파트와 새솔초등학교에서는 소음·진동이 미검측 됨(진동검측결과:0.013→허용기준치의 약 1/15이하)
  - 약 50m 이격거리의 도시가스관에서는 소음·진동이 측정기준 이하로 검측 됨
- 시험발파 장약량(0.75kg, 0.5kg)을 적용시 측정기준 이하로 검측 되므로 당 현장의 발파 기준인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가능하며, 경찰서로부터 본발파 허가를 수령함.

### ○ 2차 시험발파 실시('16.6월중 예정)

- 공법변경에 따른, 시험발파 추가 실시 예정

#### ※ 관련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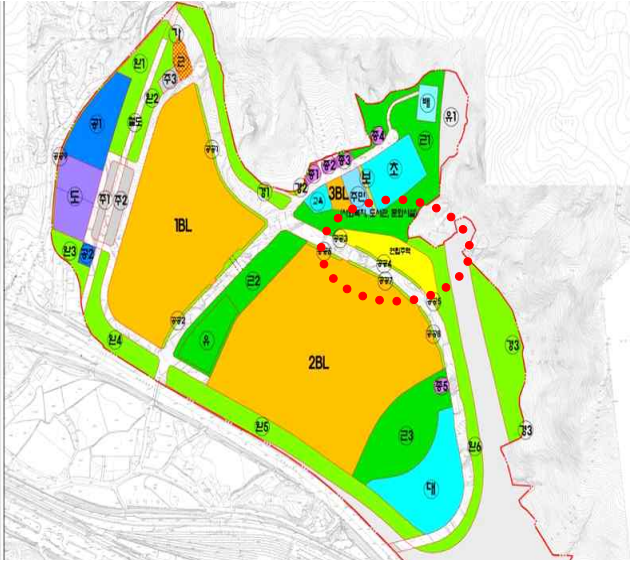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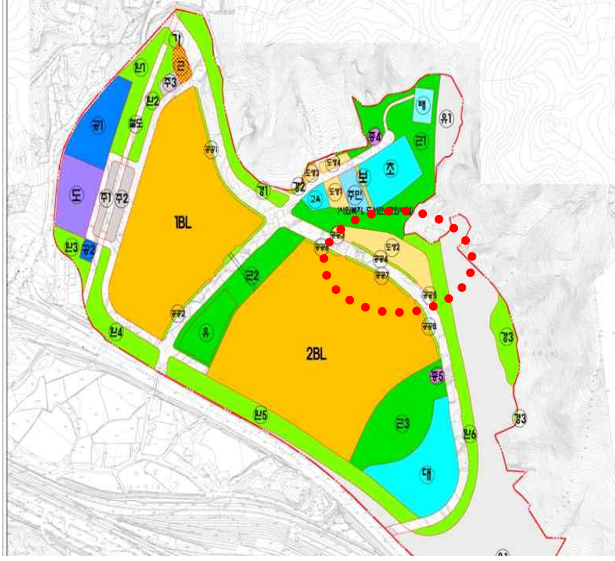
: 『국토교통부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』 및 『신내3지구 환경보전방안검토서』에 의거하여 진동 속도에 따른 규제기준을 허용진동치 0.2cm/sec이하.

## ■ 피해발생 시 대책

- 발파시 소음,진동 계측관리를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나,
- 관련 피해발생 시, 조사후 보수조치

### 3. 4단지 개발계획변경(연립주택→행복주택)관련 절차적 하자여부.

-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정책 일환으로 신내3지구 연립주택용지를 도시형생활 주택용지로 변경 및 임대주택 추가 공급 검토하여,
- 『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5조, 제11조에 의거하여 【연립주택→ 도시형생활주택 변경】을 포함한 신내3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고, 관련기관(중랑구청, 서울시 등)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'15.01.07 적정 승인 되었음.
- 『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6조2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①항 4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·변경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(내용 :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토 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)에는 주민 등의 청취를 아니한다에 따라, 동 변경은 주택건설용지 면적 100분의 5범위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경미한 사항임.
-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현황(2015.01.07. 승인 당시)

기정	변경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체 면적 : 584,108.2㎡</li> <li>· 주택건설용지 : 193,644.0㎡</li> <li>· 연립주택용지 : 8,965.0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체 면적 : 584,108.2㎡</li> <li>· 주택건설용지 : 195,488.0㎡</li> <li>· 도시형생활주택(4단지) : 8,965.0㎡</li> </ul>